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33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이상희 · 김선교 · 한지아
배준영 · 최수진 · 김성원
정동만 · 조승환 · 김장겸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구·시·군 당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에 대하여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군 당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 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경우에는 단독 시·도의원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지고, 인근 선거구와의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현재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을 위해서는 시·도의원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부 예외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의원지역구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명시하되,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삭제, 제26조제1항제2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을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되, 하나의 시·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시·의원지역구 간 인구편차는 상하 50퍼센트(인구비례 3:1)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 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쳐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① ----- ----- ----- ----- ----- ----- ----- ----- ----- ----- ----- ----- ----- ----- ----- <u><단서 삭제></u>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第26條(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市・道議會議員地域選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

學區(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道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1명으로 하며, 그 市·道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 한다.

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人口·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시·도의원지역구 간 인구편차는 상하 50퍼센트(인구비례 3:1)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

② ~ ④ (생략)	<u>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